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3 선고 2021가단2032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

담당변호사 전원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의청

변 론 종 결 2021. 11. 1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.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1. 18. 체결된
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
2. 피고는 C에게 별지2.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 출급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 :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피보전채권

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C 및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94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. 10. 30. “ 피고들(C 및 D)은 연대하여 원고(이 사건 원고)에게 289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”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

(1) C의 무자력

(가)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의 기재, 이 법원의 E 주식회사,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

1) C는 2020. 11. 18. 별지1.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억원, 채무자 C 및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설정계약’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2020. 11. 18. 접수 제918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고 한다)를 마쳐 주었다.

2) 이 사건 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. 11. 18.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위 피보전채권액 약 2억 8,900만원, 피고에 대한 차용금 2억원, E 주식회사 대출액 1억 69,703,745원, 중소기업은행 대출액 39,971,105원, 주식회사 F 대출액 약 1억 15,486,613원, G카드 대출액 합계 약 8억 14,161,463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는데,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신고채권액보다 배당액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.

(2)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)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고, 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전부였는데, 이에 대하여 특정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.

다. 피고의 사해의사

(1)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(2) 피고는 C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하나,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라. 취소 및 원상회복

(1)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

(2) 갑 제4,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[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, I(중복)], 2021. 8. 19.자로 피고에게 143,345,5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손승우

[별지 1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광주시 동

[도로명주소]

경기도 광주시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콘크리트경향철골트러스경사지붕 15층

공동주택(아파트)

지하2층

175.154㎡(계단실)

지하1층

101.676㎡(계단실)

1층 717.930㎡

2층 684.870㎡

3층 874.708㎡

4층 874.708㎡

5층 861.028㎡

6층 861.028㎡

7층 861.028㎡

8층 861.028㎡
9층 861.028㎡
10층 861.028㎡
11층 861.028㎡
12층 861.028㎡
13층 861.028㎡
14층 766.109㎡
15층 766.109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6층 호

철근콘크리트구조

84.911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광주시

대 16444.7㎡

대지권의 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. 16444.7분의 59.707

-이 상-

[별지 2]

채권의 표시

피고가 소외 대한민국(소관 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동산강제경매, (중복) 사건에 관하여 2021. 8. 19. 배당결과 근저당권자로서 받은 배당금 143,345,571원의 출급채권.

